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17
----------	-------

발의연월일 : 2025. 9. 26.

발 의 자 : 김문수 · 양부남 · 조인철
박지원 · 정을호 · 백승아
이광희 · 주철현 · 허성무
한준호 · 김우영 · 전용기
김현정 · 박민규 · 이수진
정준호 의원(16인)

제안이유

전라남도는 전국 광역시도(세종시 제외)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아, 의사 수가 부족하고, 의료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 국토연구원의 「국토조사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남 지역의 종합병원 접근성은 평균 20.4km, 응급의료시설은 평균 14.3km로 열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현황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남 지역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와 전문의수는 각각 1.8명, 1.4명 수준으로 각각 전국 2.2명, 1.8명에 못 미치고 있음. 이로 인해 2022년 기준 응급환자 전원을 2.7%, 중증외상환자 전원을 12.9%로 가장 높고, 입원 및 외래진료의 자체충족률은 각각 66.1%와 69.2%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

러 있음.

또한, 전남 서부권의 경우 환자 이송이 어려운 도서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전남 동부권의 경우 인구 밀집 및 여수 및 광양 등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2021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상 노동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수가 0.72‰로 전국 평균인 0.43‰의 두 배에 이르는 등 인명사고가 심각한 상황임.

이와 같은 현실에 대응하고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및 의료취약지 기피 현상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필수 의료인력 양성 및 지역필수 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의료취약지역인 전남 지역의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교육부장관 소속 설치위원회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 각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동서부 권역 간 의료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10년간 전라남도 의료분야에 종사할 공공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두어 전문의료인 확충 및 전라남도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

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고 의료균형 발전을 위해 각 대학교에 캠퍼스를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의과대학의 정원은 200명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위하여 국가의 경비지원과 전라남도의 기금 설치, 물품양여, 토지 사용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등).

라. 의과대학 정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여야 하는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해당 인원들에 대한 학비등의 지원 및 인센티브, 감독 규정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등).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가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의료 인력 부족 및 지역 의료 불균형을 시정하고, 의료분야에 종사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여 전라남도 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며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연합형통합대학교”란 2개 이상의 국립대학이 하나의 국립대학으로 전환하면서 지역별 특성·교육여건, 지역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각 대학별로 자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각 대학의 운영·관리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총장을 각각 두고 각 대학의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연합형통합대학위원회를 두는 대학을 말한다.

제3조(설치) ①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는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의과대학(이하 “통합의과대학”이라 한다)은

지역별 인구수, 지역 간 균형발전,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 교사(校舎), 부속병원, 연구시설 등의 시설이 위치한 학교 부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4조(설치위원회) ① 통합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 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위원회(이하 “설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의과대학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통합의과대학의 부지 조성 및 그 명칭 등에 관한 사항
4. 통합의과대학의 부속병원 설치 및 그 위치에 관한 사항
5. 통합의과대학의 부속병원과 기존 도내 의료기관간 연계·협력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7. 그 밖에 통합의과대학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설치위원회는 위원장인 교육부장관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을 포함하되, 과반수를 전라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설치위원회의 구성·임기, 위촉·해촉 및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입학정원) 교육부장관은 통합의과대학의 총 입학정원을 20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남도의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의료인의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의과대학을 통한 의료인 양성 및 부속병원 설치 등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기존 지역 의료기관과의 교류·협력의 촉진 및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통합의과대학의 설치와 입학정원의 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입학자격·수업연한·교육과정·학위의 수여와 그 밖에 통합의과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통합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제8조(예산지원의 특례) ① 국가는 통합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

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설비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내용 및 지원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기금의 조성) ① 전라남도 또는 전라남도 내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세액 공제 및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는 통합의과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통합의과대학에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목포대학교의 장 또는 국립순천대학교의 장은 통합의과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 공공의료과정 및 의무복무 제도

제12조(지역 공공의료과정) ①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의 장은 통합의과대학 입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공공의료 관련 과목,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는 지역 공공의료과정(이하 “공공의료과정”이라 한다)의 학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한다.

② 공공의료과정에는 전라남도 동부와 서부 권역의 도서·벽지 등 지리적 특성과 전문병원·응급의료기관 등 의료제공체계, 산업 환경 및 이와 관련된 사고 등 사회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교육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공의료과정의 선발 방법과 교육과정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13조(겸직 또는 파견 요청) ①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공공의료과정의 교육과 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

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 또는 병원 소속 직원의 겸직 또는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통합의과대학의 직무를 겸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을 통합의과대학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복무) ① 통합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과정을 이수하고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의무복무 대상자”라 한다)은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라남도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의료보건업무에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의무복무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이하 이 조에서 “전문의수련”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서 또는 전문과목에 대하여 전문의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전문의 수련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의무복무 의사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무복무 중인 의사에 대하여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우선 채용하거나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의무복무가 이루어진 기관에 우선 채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공공의료과정에 대한 학비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이하 “학비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① 제16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휴학, 성적기준의 미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학비등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자퇴하거나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다른 의과대학으로 편입학한 사람
 3. 졸업 후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4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8조(의사 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사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전라남도지사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 면허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의무복무의 잔여기간 동안 의사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제19조(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 이행 실태를 지도·감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 이행 실태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통합의과대학의 설치, 입학정원 산정, 학생의 모집, 평가·인증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